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년월일 : '96.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96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6.8.10일 내무부 장관 허가

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관련자산의 관리
2. 첨단산업·과학기술 및 산업기반기술의 전시·홍보사업
3.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박람회기념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재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년12월

내 무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11. 12,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6년 11월 18일
3. 상정일자 :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1996. 12. 17)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 1. 제안이유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상공자원부 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안 제22조)
- 나.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엑스포기념재단의 시세감면기간을 1년 연장 (안 부칙 제2조)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장홍진)

- 본 조례안은 대전EXPO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의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시세감면 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EXPO기념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세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려는 것임.

- 그동안 계속 제기 되었던 EXPO기채 800억원이 해소되었고 구세 감면 조례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97. 12. 31)측면과 기타 지역

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사항등 제반여건등을 고려해 볼때 1년간 연장해 줌으로써 대전의 상징인 과학공원으로서의 명소육성

과 관광 및 고용촉진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Ⅳ. 토 론 요 지 : 생 략

### Ⅴ.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